

2025회계연도
법제사법위원회 소관
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법	무	부	소	관
대	법	원	소	관

2026. 9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I. 소관 기관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	1
II. 심사경과	1
III. 예비비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	3
IV. 대체토론 요지	5
V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	5
VI. 심사결과	7
VII. 소수의견 요지	7
VIII. 찬반토론 요지	7
IX.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	7
【 붙 임 】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	9

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예비심사보고서

2026. 9.

법제사법위원회

I. 소관 기관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1. 법무부 소관: 일반회계
2. 대법원 소관: 등기특별회계

I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6년 5월 29일
2. 회부일자 : 2026년 7월 1일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◎ 제438회국회(임시회)

- 제1차 위원회(2026. 8. 19.) 상정·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
토론

[대법원]

- 제2차 위원회(2026. 8. 21.) 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
토론

[법무부]

- 제3차 위원회(2026. 8. 26.) 상정 · 소위원회 회부

◎ 제439회국회(정기회)

-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(2026. 9. 1.) 상정 · 의결

- 제1차 위원회(2026. 9. 1.) 상정 · 소위원회심사보고 · 대체토론 ·
의결

III. 예비비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심정희, 전문위원 윤상열)

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비비 개관

1 일반회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배정액(A)	지출액(B)	불용액	집행률 (B/A)
① 법 무 부	381,262	373,602	7,660	98.0

2 특별회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회계명	예산액(A)	지출액(B)	불용액	집행률 (B/A)
① 대 법 원	등기특별	100	-	100	0.0

나 검토보고 요지

1 법 무 부

사업별 구분	세부 검토사항	검토보고 페이지
<일반회계>		
(예비비 지출) 1. 조은석 특별검사 (1339-309), 이명현 특별검사 (1339-311)	◦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비비 추가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비의 전용이 발생하였고, 추가로 받은 예비비를 대부분 불용한 사례가 나타났으므로, 법무부는 향후 예비비 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, 연내 실제 집행가능한지 등 실제 지출소요를 면밀하게 추산할 필요	p.259

IV. 대체토론 요지

※ 회의록 참조

V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

(소위원장 김한규)

법무부·법제처·감사원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·헌법재판소·대법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각 기관별로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먼저,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, ‘검찰국 소관 예산집행 세부내역 미제출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, ‘예비비 전용 및 과다 배정·불용 개선 필요’ 등 총 1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, ‘검찰청 보유 영상녹화장비 수사기관에 이관 필요’ 등 총 4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.

다음,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, ‘청소년 법제관 사업 실효성 종합적 재검토 필요’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, ‘미제출 법률안 지속적 점검 등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실적 관리 필요’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.

다음,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‘유병호 감사위원의 위법·부적절한 감사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재점검’ 1건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, ‘전용 및 세목조정 시 연말 집중화 현상 심화 등 부적절한 집행 개선’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, ‘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’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.

다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, 내부 감찰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과 주의를 각각 요구하였고, ‘집행관리 강화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’ 등 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.

다음,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, ‘장기해외연수 학자금의 초과집행 지양 필요’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, ‘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제도 및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’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.

다음,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‘내역변경 없이 타 사업에 특정업무 경비 등 예산집행 시정 필요’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, ‘조정 가능성이 소멸한 예산의 부적정한 사고이월 후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’ 등 총 1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, ‘송달료 세부 집행계정 마련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’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.

끝으로,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 연구용역에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.

VI. 심사결과

1. 법무부 소관

원안대로 의결함.

2. 대법원 소관

원안대로 의결함.

VII. 소수의견 요지

해당사항 없음.

VIII. 찬반토론 요지

※ 회의록 참조

IX.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

[붙임] 참조

[붙임]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

1.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: 총 2건

(단위: 건)

부처명	변 상	징 계	시 정	주 의	제도개선	(중 복)	합 계	기 타
법무부	-	-	-	2	-	-	2	부대의견 1건
대법원	-	-	-	-	-	-	0	

2. 시정요구사항(예비비)

가. 법무부

연번	시정요구명	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		시정요구 유 형	조치대상 기 관
1	예비비 전용 및 과다 배정·불용 개선 필요	관련사업명	일반회계 예비비 - 조은석 특별검사(1339-309), 이명현 특별검사(1339-311)	주의	법무부
		지적사항	○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비비 추가배정 지연으로 예비비의 전용이 발생하였고, 추가로 받은 예비비를 대부분 불용한 사례도 있었음. -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인력 미충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수 예산 잔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억 9,900만원, 임차료 1억 1,000만원 및 사업추진비 4,200만원 등 총 5억 6,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, 2차 예비비로 보수(110-01) 6억 1,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, 결과적으로 보수(110-01) 항목의 예산에서 총 17억 1,800만원을 불용처리 - 이명현 특별검사는 2차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2차 예비비가 적시에 배정되지 않아 연장 기간에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며, 이에 임차료 9,900만원 및 국내여비 5,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		
		시정요구사항	○ 법무부는 예비비 배정을 신청할 때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, 연내 집행가능한지, 인력충원 등 지출요인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고,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며, 예비비의 불필요한 전용이나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		

연번	시정요구명	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		시정요구 유 형	조치대상 기 관
2	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국회 제출 필요	관련사업명	일반회계 예비비 - 조은석 특별검사(1339-309), 민중기 특별검사(1339-310), 이명현 특별 검사(1339-311)	주의	법무부
		지적사항	○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조은석·민중기·이명현 특별검사 모 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, 거부 사유도 직무수행 곤란, 공정한 재판 저해 우려 등으로 각각 상이하였으며, 익명처리·비공개 열람·항목별 제출 등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. ○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의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함에도 사용내역 제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국회는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방 법이 없으며, 한시조직일수록 사업 종료 후 집행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함.		
		시정요구사항	○ 법무부 및 3대 특별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모두 국회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, 익명처리·비공개 열람·항목별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특수활 동비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		

3. 부대의견(예비비)

- 향후 법무부 및 특별검사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.